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3993
----------	-------

제안연월일 : 2023. 8.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6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9. 16.)에, 2021년 9월 15일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12. 3.)에, 2023년 2월 10일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3. 4. 1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3. 5. 1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3. 5. 11.)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강화(안 제7조).
- 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률 체계 정비(안 제12조 등).
- 다.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 규정(안 제17조의2)
- 라. 준설물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활용가능 기준 마련(안 제18조)

- 마.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대상 확대  
(안 제29조)
- 사.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 아. 업무 재위임 근거 마련(안 제33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으로, “폐기물은”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을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신고를 한 자”로,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할 수 있다”를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은”을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준설물질”을 각각 “준설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위하려는 자”를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선박·설비 및 장비”를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하고”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관리하고”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로, “제출”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존기간”을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운영”을 “건설·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 관리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폐기물”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한다.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37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관리한 자 또는”을 “관리한 자,”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35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생략)</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폐기물</u>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 폐기물을 -----</u></p> <p>③ (현행과 같음)</p>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  
② 시장-----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제18조(준설물질의 활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준설물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

1. 2. (현행과 같음)

② 준설물질등-----  
-----  
-----  
-----  
-----  
-----  
-----.

③ -----  
-----  
----- 준설물질등-----  
-----.



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

② -----  
-----  
-----  
-----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  
----- 제출하고 -----  
그 사본을 보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보관기간 -----  
-----.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집행) -----  
시장-----  
-----  
-----  
-----  
-----  
-----  
-----.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건조·설치 및 운영

5.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 ② (생략)

<신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

5.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  
역의 사후관리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  
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  
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벌칙) -----  
-----  
-----  
-----.

1. ----- 폐기

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  
물관리업을 한 자

3. (생략)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을 활  
용한 자

2.·3. (생략)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  
한다)-----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3.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  
-----  
-----  
-----.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  
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  
한 자

2. -----  
----- 준설물질등-----  
-----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7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 3. ~ 8.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 3. (생략)
-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제출하

- 2. -----시장-----  
-----  
-----
- 3. ~ 8.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  
-----  
-----  
-.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5. -----  
-----  
-----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
- 6. -----  
----- 관리한 자,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생략)

<신설>

2. (생략)

③ (생략)

-----

--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  
·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